

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1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시행('17.5.30.)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과 일치하도록 정비 (안 제13조제2항)

나. 「평생교육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동된 조문정비 (안 제14조)

(「평생교육법」 제21조의2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17.5.30.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3조제2항에서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 「평생교육법」 개정·시행에 따라 안 제14조 중 법 제21조의2에서 법 제21조의3으로 법령 이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그 밖에 연임 표현을 간소화하여 정비하였음.(안 제8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평생교육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5.29.>]